



2021년 2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

사업설명자료

2021.06.26.

경기교통공사(준공영운영팀)



















목 차

- 1. 사업개요
- 2. 추진일정
- 3. 사업시행 조건(일반 특수)
- 4. 신청자격 및 방법
- 5. 운송사업자 선정
- 6. 제안서 작성방법
- 7. 제안서 평가사항

1. 사업개요



1. 사업개요

○ 추진배경: 민영제 반납 노선 →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

○ 사업대상: 5개 시·군 / 12개 노선 / 109대

○ 면허기간: 5년 + a(대상노선이 국가사무화 되는 시점에 따라 면허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)

○ 입찰계획: 5개 단위 노선입찰 진행(노선그룹 + 기점 지자체별)

시군명	노선수	대수	입찰단위	117 PH	1 44	ГIJ.人	OIZFLFOI
합 계	12	109	5	시군명	노선수	대수	입찰단위
광명시	1	10	1	평택시	1	9	1
용인시	7	72	1	화성시	2	11	1
파주시	1	7	1				

2. 추진일정



2. 추진일정

- 사업신청자 접수(평일 09:00 ~ 17:00)
 - ▷ 입찰단위 1번 ~ 5번(광명-1, 용인-1, 파주-1, 평택-1, 화성-1): '21. 7. 7.(수)
-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(13:00 ~ 18:00)
 - ▷ 1위원회: '21. 7. 12.(월)
-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
 - ▷ '21. 7. 15(목) 14:00 이후
- 우선 협상대상자 협상 및 이행협약 체결
 - '21. 7. 22.(목) ~ 7. 23.(금)
- 한정면허 발급
 - ▷ '21. 7. 23.(금) ~ 7. 30.(금) (예정)
- 운행개시



3. 사업시행 조건(일반)



3. 사업시행 조건(일반)

- 면허기간 : 5년 + a
 - ▷ 대상노선이 국가 사무화 되는 시점에 따라 면허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
- 노선 및 운행 계획 : 제안공고문의 운행 계획을 기본으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결정
 - ▷ 실제 운행대수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최종 결정
- 재정지원 : 운송수입금이 운송비용보다 적은 경우 부족금액 재정지원
 - ▷ 입찰단위에 포함된 각 사업노선의 협상금액
 - 해당 입찰단위의 '항목별 기초금액'에 대한 '사업신청자'가 제출한 '항목별 제안금액'의 비율
 - → 각 사업노선의 '노선의 항목별 기초금액'에 적용하여 산정



















3. 사업시행 조건(일반)

- 차량확보: 입찰단위에 포함된 각 노선의 실제 운행대수는 공고된 인가대수 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
 - ▷ 사업신청자는 별도의 차량확보계획을 제출하지 않음
- 편의시설1: 와이파이, USB 충전기, 공기청정필터, 공공버스 랩핑, LED전광판 및 잔여좌석알림
 - ▷ 경기교통공사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설치 후 재정지원
- 편의시설2: 차량 디자인 내부, 교통약자 배려석
 - ▷ 운송사업자 부담
- 차고지 및 부대시설 : 입찰단위 내 사업노선별로 제안내용 작성
 - ▷ 자가차고지 ➡ 차고지증명서 제출
 - ▷ 임대차고지 ➡ 차고지에 대한 임대계약서 제출
 - ▷ 공영차고지 ➡ 관할관청의 사용계약서 제출
- 근로자 관리: 1일 2교대, 재정지원 기준 운수종사자 시급, 근로시간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

3. 사업시행 조건(특수)



3. 사업시행 조건(특수)

- 해당 입찰단위에 「경기도 공공버스 전환노선 운행 중 차량 양도 협약서」 체결되어 있는 경우
 - ▷ '운송사업자' 로 선정된 자는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한다.
 - ▷ '운송사업자' 로 선정된 자는 기존 차량을 양수 받아야 한다.
 - ▷ 협상과정에서 운수종사자 고용승계 및 차량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 한다.
- 노선의 인·면허권자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변경되는 경우,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운수사업자와 협의하여 본 노선의 면허조건과 협약서 등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 면허조건과 협약서 등의 조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

4. 신청자격 및 방법



4. 신청자격 및 방법

- 신청자격: 법인 및 법인설립 예정 자 또는 개인
 - ▷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가 가능한자
 - ▷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조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신청방법: 사업계획서 + 부속서류를 경기교통공사 준공영운영팀 방문제출
 - ▷ '사업신청자'가 2개 이상의 입찰단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, 입찰단위별로 제안서를 각각 제출
 - ▷ 제안서는 기한 내 경기교통공사에 제출
- 유의사항: '사업신청자'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 - ▷ 제출한 제안서, 기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
 - ▷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, 한정면허 취소,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음

5. 운송사업자 선정



5. 운송사업자의 선정

- 제안서 사업수행능력, 입찰가격평가, 가·감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
 - ▷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 - ▷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
 - ▷ 기술능력평가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
 - ▷ '제안금액'이 '입찰단위별 기초금액'을 초과하거나, 금액산출내역서의 금액 불일치 협상제외
 - ▷ 일찰단위 별로 '사업신청자'가 단독일 경우, 재공고 없이 1개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실시
 - ▷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
 - ▷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'운송사업자'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
 - ▷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인·면허 발급 처리절차 등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'운송사업자' 선정 취소



5. 운송사업자의 선정

- 제안서 평가방법
 - ▷ 정량적 평가, 입찰가격 평가, 가·감점 평가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
 - ▷ 중대한 교통사고 적용기간 : '21.4.1 이후 발생된 교통사고 부터 입찰공고 전일 까지
 - ▷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(제안업체 추첨으로 선정)를 구성하여 평가
 - ▷ 제안서 설명에 불참할 경우 사업신청 취소
- 제안서 정성적 평가(평가위원회)
 - ▷ 제안서를 토대로 '평가위원'이 평가
 - ▷ 지정된 '질의응답' 시간에 '평가위원'이 질이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
 - ▷ 평가시간 사업신청자당 20분(제안서 설명 10분, 질의응답 10분)
 - ▷ 참석인원은 업체별 3인으로 제한
 - ▷ 각 세부평가 기준별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(소수 셋째자리 반올림)
 - ▷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



- 제안요청서 포함된 양식으로 작성
 - ▷ 신명조체, 13포인트로 작성함
- 모든 사업계획서는 흑백으로 작성
- 제안요청서 '5.2절 사업계획서 목차' 순서로 작성
- 입찰참가서류 1부, 가격관련서류 1부, 정량평가 제안서 1부, 정성평가 제안서 8부를 제출
 - ▷ 입찰참가 서류 ➡ 원본 1부 및 전자파일(USB), 가격제안서는 USB미포함
 - ▷ 가격관련서류 ▶ 원본 1부 밀봉 제출
 - ▷ 정량평가 제안서 ➡ 원본 1부 및 전자파일(USB)
 - ▷ 정성평가 제안서 ➡ 원본 1부, 사본 7부 및 전자파일(USB)
 - ▷ 각 항목 본보고서 와 부속서류 분리하여 작성하며,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 금지



- 5.2절 사업계획서 목차 입찰참가 서류 부속서류 「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명서, 신분증」
 - ▷ 제안서 접수자와 평가위원회 참석자의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명서, 신분증 제출
- 5.2절 사업계획서 목차 가격관련 서류 본보고서 「가격제안서 / 금액산출내역서」
 - ▷ 원본 1부 밀봉하여 제출
- 5.2절 사업계획서 목차 정량평가 제안서 본보고서 「재무건전성 관련 신용평가 증빙자료」
 - ▷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유호기간은 '제안서 마김일'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
- 5.2절 사업계획서 목차 정량평가 제안서 부속서류 「차량보험요율 자료」
 - ▷ 평균 보험요율이 아닌 실제 적용 보험요율 자료제출(사업공고일 기준 2년간 대인,대물 보험요율
- <별지 양식 8> 가격제안서
 - ▷ '항목별제안금액'은 '항목별기초금액'을 초과할 수 없음
 - ▷ 운전직인건비, 연료비, 통행료, 감가상각비는 변경할 수 없음



- <별지 양식 18> 차고지 확보계획
 - ▷ 1. 차고지 위치와 수용능력(차고지 별로 연번 기입 후 작성)
 - ▶ 차고지 면적은 전체면적, 기사용면적, 실제 사용가능 면적을 구분
 - ▷ 2. 차고지 확보율(입찰단위에 포함된 사업노선별로 작성)
 - ▶ 실사용 면적이 가장 큰 1개 차고지만을 대상으로 확보율 계산
 - ▷ 3. 차고지와 기점과의 거리(입찰단위에 포함된 사업노선별로 작성)
 - ▶ 실사용 면적이 가장 큰 1개 차고지만을 대상으로 거리 계산
 - ▷ 4. 제안노선의 기점과 차고지·충전소 위치도
 - ▶ 입찰단위에 포함된 사업노선별로 하며 1개 차고지만 표시
 - ▶ 반드시 거리(도로 연장 기준)를 표시



- <별지 양식 19> 운송부대시설 확보계획
 - ▷ 운송부대시설은 법 및 편의시설로 구분하여 작성
 - ➡ 입찰단위에 포함된 사업노선별로 작성하며 소재지, 면적, 거리 작성
 - ▷ 사업노선별로 노선의 기점, 4가지 법정 운송부대시설의 위치도
 - ➡ 입찰단위에 포함된 사업노선별로 하며 1개 차고지만 함
 - ▶ 반드시 거리(도로 연장 기준)를 표시
- 운행횟수 변경
 - ▷ 각 노선의 운행횟수를 조정할 경우, 해당노선의 경로특성, 교통정체,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최적의 운행횟수를 제안
 - ▷ 이 경우 '제안금액'은 운행횟수 변경과 관계없이 공고된 해당 입찰단위의 '기초금액'을 기준으로 제안하여하 함
 - ▷ 향후 협상과정에서 운행횟수 변경에 따른 '기초금액' 변경을 반영하여 협상금액을 산정함

7. 제안서 평가사항



7. 제안서 평가사항

- <가점> 노선중복도 (+5점)
 - ▷ 운행대수가 0인 부노선의 경우 노선중복도 평가대상에서 제외
 - 입찰단위 노선중복도 평가는 주노선 기준으로만 평가함
 - ▷ 운행대수가 1이상인 부노선의 경우 노선중복도 평가대상에 포함
 - ▶ 입찰단위 노선중복도 평가는 부노선도 포함하여 평가함
- <감점> 중대한교통사고 (-5점)
 - ▷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사망사고(가해)에 대해서만 교통사고 위험도 산정
 - ➡ 교통사고 위험도(TD)= Σ(사망자수 + 중상자 × 0.7)
 - ▷ 중대한교통사고 적용기간
 - ➡ '21.4.1. 이후 발생된 교통사고부터 적용함

- 감사합니다 -